

## 이번 법인세 신고시 12월말 외국법인에게

### 최초 적용되는 개정세법 Check-Point

(국세청, 2007. 2.)

#### 1.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법법 §1, §9 ①)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봄.
  -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으로 판정받은 법인이 국내 세법 및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접대비, 기부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적용시기> 200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 (법령 §118 ④)

- 이전가격 조정은 국가간의 과세권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이는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를 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상이하므로,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에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
  - 국조법 제13조에서도 상호합의결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적용시기> 2006. 2. 9.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3.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개선 (법령 §131)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 판정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적용시기> 2006. 2. 9.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4.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법법 §93 6호, 법령 §132 ⑦)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항공료·숙박비·음식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2006.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5.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법령 §132 ⑫·⑬)

-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함.
  -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00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6.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문화 (국조법 §2의 2)

- 내·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피난처 등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도록 규정(선언적·확인적 규정)

<적용시기> 2006. 5. 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06. 5. 24.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

#### 7.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배제 (국조법 §29 ①)

- 국조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규정(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은 신설된 법인세법 제98조의 5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4의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과 서로 상충되므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신설

<적용시기> 2006.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8.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 조정 (국조령 §3의 2)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는 무상증여만이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당연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적용시기> 2006. 8. 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9.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적용순위 조정 (국조령 §4 3호)

-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합리적 방법」의 하나로 취급되어 3순위로 적용되고 있는 Berry Ratio방법을 거래순이익률방법과 같이 2순위로 취급하도록 상향 조정

\* Berry Ratio방법

: 단순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제3자기업이 실현하였을 매출총이익÷영업비용으로 산출한 비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가격을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적용시기> 2006. 8. 24. 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

#### 10.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국조령 §7 ①)

#####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용역거래에는 무형자산, 이자·리스료 등을 포함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함

##### ◦ 제출서류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적용시기> 2007. 2. 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 국제거래자료 제출서류의 금액단위 조정 (국조칙 §6)

□ 국제거래자료 제출시 금액단위를 천원단위에서 원단위로 조정

※ 해당서류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지사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적용시기> 2007. 2. 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